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 3. 13.(목)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박진희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5년 3월 4일

○ 회부일자: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충청북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라.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마. 추진사업(안 제5조)

바.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안 제6조)

사. 예산지원(안 제7조)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자.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 폐지(부칙)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1910년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성별·신분·종교·직업을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전개한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미래세대가 기억해야 할 역사임
-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2016.5.20.)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기념 또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단순히 선양 행사 개최 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일제강점기에 자주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활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등을 가르치고 기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도내 학생 및 교직원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독립운동사 교육을 실시하고,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운영을 통해 선양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기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의의가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본 조례는 도내 학생과 교직원에게 대한 독립운동사 교육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지원,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

- “학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을 따르고 있고, “독립운동사 교육”에 대해 정의한 관련 법령은 없으나 조례안의 정의는 이념적 편향 등이 반영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짐

○ 안 제3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에서 독립운동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의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의 사업 추진, 안 제6조의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운영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라 사료됨

○ 안 제4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각 학교에서 독립운동사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독립운동사 교육에 대한 명확한 기본방향과 목표,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조치라 보여짐

○ 안 제5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에서의 독립운동사 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념적 편향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교원 연수 등이 필요하고 단순 교육 외 각종 행사 및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올바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 안 제6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는 충북 지역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기념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확대하여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을 통해 독립운동사 교육 및 선양 행사를 추진한다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뜻깊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는 효율적인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는 591명*이고 도내에는 139개의 독립운동사적지**가 있어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한다면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독립운동사 교육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현황(2025.3월 기준)

**충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연구보고서(단체사상 및 충북 독립운동사 고찰, 2018)

○ 부칙 제2조는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전부개정이 아닌 제정 형식을 취하고, 이에 따라 부칙에 기존 조례의 폐지 규정을 두는 것으로 입법 절차상 타당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우리나라 근현대사 중 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사 교육을 강화하고 그 뜻을 기리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법제처의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내용상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담당부서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
- 다만, 역사 관련 교육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적 편향이 반영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되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독립운동사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부분에 유념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